

# 융합전자기술연구소 규정

2003. 2. 7 제정

2012. 10. 25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전자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2.10.25)

제 2 조 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에 둔다.

제 3 조 (사업) 연구소는 융합전자기술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(개정 2012.10.25)

1. 융합전자기술 관련 분야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 (개정 2012.10.25)
2. 바이오 기술(BT), 나노 기술(NT), 환경 기술(ET) 등의 각 분야와 전자공학과의 융합연구를 위한 첨단 이론 및 알고리즘 연구 (개정 2012.10.25)
3. 융합전자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 (개정 2012.10.25)
4. 산업체에서 위탁하는 연구 사업 (개정 2012.10.25)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4 조 (소장·부소장)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소장은 공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조직) ①연구소에 바이오전자연구부, 신호처리연구부, 정보통신기술연구부, 공동실험실, 자료실 및 행정실을 둔다. (개정 2012.10.25)

②바이오전자연구부는 차세대 나노바이오전자와 관련된 소자, 회로 및 시스템 설계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2.10.25)

③신호처리연구부는 생체신호처리 등 차세대 신호처리기술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2.10.25)

④정보통신기술연구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및 초고속 네트워크를 위한 핵심 알고리즘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2.10.25)

⑤공동실험실은 연구소가 보유하는 기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⑥자료실은 관련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의 수집, 정리,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⑦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 및 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6 조 (부장·실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 및 실에 부장 및 실장을 둘 수 있다. 부장 및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

명한다. (개정 2012.10.25)

②각 부장 및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7 조 (연구위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2.10.25)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산업체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2.10.25)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8 조 (연구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9 조 (행정인력) 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(개정 2010.7.7)

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융합전자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2.10.25)

②위원회는 공과대학장, 소장, 부소장,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과대학장이 된다. (개정 2012.10.25)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산학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 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과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
3. 운영위원 명단

(개정 2010.7.7)

제 12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연구소의 경비는 산업체의 산학협력 지원 자금, 본교의 보조금, 정부 및 기타 외부의 지원금, 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. (개정 2012.10.25)

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.

제 13 조 (운영세칙)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3. 2. 7 제정)

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10. 25 개정)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